

대법 “야자·체벌금지 학생인권조례 유효”

〈아간자율학습〉

교육부, 전북도의회 상대 무효 확인 청구소송 패소

사법부 첫 판단...광주·서울·경기 등 4곳서도 시행

두발과 복장의 자유, 체벌금지 등을 규정한 전라북도의 학생인권조례 효력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4일 교육부장관이 전라북도 의회를 상대로 낸 학생인권조례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조례의 효력이 유효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년여 논란 끝에 2013년 7월 공포된 전북 학생인권조례는 대법원 판결로 유지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이 학생인권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효력을 두고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실체적 판단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인권조례는 헌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 인정되는 학생의 권리를 확인하거나 구체화하고, 그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고 있는데 불과해 교사나 학생의 권리를 새롭게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고 판단했다. 또 “인권조례의 구체적인 내용이 법령에 어긋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체벌금지나 복장·두발 규제를 제한하도록 한 부분 등도 교육부의 주장과는 달리 초·중등교육법의 범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서울과 광주, 전북 등 네 곳에서 시행하고 있다.

전북학생인권조례는 학교 교육과정에서 체벌을 금지하고 복장과 두발의 개성을 존중하며 소지품 검사를 최소화하고 야간 자율학습이나 보충수업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교육부는 2013년 7월 전북도의회가 학

생인권조례를 의결하자 상위법 위반이라며 전북교육청에 재의를 요구하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전북교육감이 이를 거부하고 조례를 공포하자 대법원에 무효확인소송을 냈다.

지방자치법상 교육부장관은 시도의회의 결의가 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교육감에게 재의를 할 수 있고, 교육감이 이를 따르지 않으면 대법원에 직접 제소할 수 있다. 소송은 대법원 단심 재판으로 끝난다.

대법원은 지난 2012년 교육부 장관이 같은 이유로 서울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해 제기한 무효소송에서는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각하결정했다. /연합뉴스

광주지역 고교

야자·보충수업

사라질까

법원, 학생인권조례 인정파라

광주지역 고등학교의 야간자율학습과 보충수업은 사라질까.

교육부가 전북도의회를 상대로 낸 학생인권조례 무효확인소송에서 대법원은 14일 ‘유효’ 결정했다. 학생인권조례에 관한 첫 본안 확정 판결로, 법원이 학생인권의 실체를 인정할 것이다.

광주 학생인권조례에는 보충수업·자율학습 등 강제적인 교육 거부(제10조2항), 교내·외 행사 참석 강요 금지(제10조4·5항), 체벌 금지(제11조2항), 강제노동 금지(제11조3항), 소지품·일기 검사 금지(제12조1항), 두발·복장의 자유(제14조2항) 등이 담겨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교육감 직선제가 처음 시행됐을 때 진보교육감들의 대표적인 공약이었다. 반면, 보수 진영에서는 비판의 대상으로 교육 정책의 대표적인 ‘뜨거운 감자’다.

대법원 판결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광주와 서울, 경기, 전북 등 4개 교육청은 학생인권 활동의 추진 동력을 얻게 됐다. 게다가 전국 교육감 중 13명이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상황에서 학생인권조례는 추가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보수진영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법적 판단을 따를 수밖에 없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다른 교육청이 추가로 학생인권조례를 만들면 또다시 법적 대응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명물 사지 전망타워

광주시 남구 사직공원의 옛 팔각정 자리에 들어선 전망타워가 14일 밤 광주 도심을 밝히고 있다. 26억원을 들여 지난해 10월 완공한 전망타워는 지하 1층·지상 3층의 규모로, 원형계단을 이용해 13.7m를 올라가면 무등산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 광주 시가지지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서 ‘국가폭력 트라우마 국제회의’

내일 DJ센터... ‘유서대필’ 피해 강기훈씨 사례 소개

광주트라우마센터는 16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15 제3회 국가폭력 트라우마 국제회의’를 연다.

이날 행사에서는 “재판과정에서 참여하는 고문생존자 트라우마와 치유”를 주제로 김상훈 법무법인 빛고를 변호사,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 강영신 전남대 심리학과 교수, 송소연 진실의 힘 상임이사 등이 발제자로 나선다.

김 변호사는 ‘고문피해자 구제 및 배상

을 위한 과거사재판에 대한 비판’이라는 주제를 통해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피해자 강기훈(51)씨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김 변호사는 “자연된 재판이 잘못된 재판보다 더 해악이 될 수 있고 ‘재판의 자연’은 ‘권리보호의 거할’과 동의어가 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주제 발제에 나서게 된다.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도 ‘한국 국가폭력 생존자들의 트라우마와 그 치유과정’에 대한 반성’이라는 발제에서 “사건 조작,

고문 등을 기획·명령하거나 직접 그 과정을 수행한 가해자들이 살아있음에도 이들에 대한 수사는 하지 않고 피해자들에게만 무죄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취지로 발제에 나선다.

이외 강영신 전남대 교수도 ‘재판과정의 고문생존자를 위한 지원 사례’를 주제로 발제하고 1980년 5월 시민군으로 도장을 사수하다가 상무대에 끌려가 고문당한 박천만씨가 과거 경험을 이야기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29 달뜨기 03:24
해질 19:29 달질 16:15

‘스승의 날’

대체로 흐리고 낮 한때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었다. 예상 강우량 5~20mm

지역별 날씨 (°C)

광주	흐림	18/25	보성	가름호리고비	16/23
목포	흐림	17/22	순천	가름호리고비	18/23
여수	가름호리고비	18/20	영광	가름호리고비	17/23
완도	가름호리고비	17/25	진도	가름호리고비	18/23
나주	가름호리고비	17/23	전주	흐림	19/25
구례	흐림	18/25	군산	흐림	16/20
강진	가름호리고비	18/22	남원	흐림	18/23
해남	가름호리고비	18/23	홍산도	가름호리고비	16/19
장성	흐림	17/24			



바다 날씨

지역	방향	오전		오후	
		파고(m)	풍향	파고(m)	풍향
서해	남바다	남~남서 0.5~1.0	북~북동 0.5~1.0	남~남서 0.5~1.0	북~북동 0.5~1.0
	남바다	남~남서 0.5~1.0	남서~서 0.5~1.0	남~남서 0.5~1.0	남서~서 0.5~1.0
남해	남바다(동)	남서~서 1.0~1.5	남서~서 1.0~1.5	남서~서 1.0~1.5	남서~서 1.0~1.5
	남바다(서)	남~남서 1.0~1.5	남서~서 0.5~1.5	남~남서 1.0~1.5	남서~서 0.5~1.5

생활지수

수면	50
운동	30
빨래	60

주간 날씨

날짜	16(토)	17(일)	18(월)	19(화)	20(수)	21(목)	22(금)
날씨	☀	☀	☁	☀	☀	☀	☀
기온	15/28	12/28	14/23	15/26	12/26	12/27	14/27

‘유서대필’ 강기훈씨 무죄

大法 “국과수 필적 감정 신빙성 없어” 검찰 상고 기각

1991년故김기철씨 분신 사건 관련 24년만에 누명 벗어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불리는 유서대필 사건의 강기훈(51)씨가 재심을 감정에놓고도 4명의 감정인이 공동 심의했다고 위증한 점을 지적하며 이를 토대로 한 과거 판결은 재심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국과수는 2013년 12월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강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씨는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동료였던 김기철씨가 1991년 5월 노태우 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분신했을 때 유서를 대신 써주고 자살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돼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

당시 검찰은 김씨의 동료였던 강씨를 자살의 배후로 지목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도 김씨 유서와 강씨 진술서의 필적(筆跡)이 같다는 감정 결과를 내놨다. 강씨는 그해 7월 자살방조죄로 재판에 넘겨져 1992년 징역 3년 확정 판결을 받아 만기출소했다.

10년이 훌쩍 지난 2007년 진실화해위원회(진실위)는 유서의 필적이 강씨가 아닌 김씨의 것으로 보인다는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강씨는 재심을 청구한 지 4년여만인 2012년 10월 대법원에서 재심 개시결정을 받았다. 대법원은 재심을 개시하면

서 1991년 국과수 감정인이 혼자서 유서를 감정해놓고도 4명의 감정인이 공동 심의했다고 위증한 점을 지적하며 이를 토대로 한 과거 판결은 재심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국과수는 2013년 12월 유서 필체에 대한 새로운 감정 결과를 내놨고, 2014년 2월 서울고법은 이를 토대로 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유죄 선고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국과수 필적 감정 결과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보’자를 ‘오’자처럼 보이도록 쓰는 김씨 필체의 특징이 유서에서도 그대로 나타났지만 강씨의 필체는 이와 전혀 달랐고, 검찰이 제시한 다른 증거만으로는 강씨가 김씨의 유서를 대신 썼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강씨는 다만 서울고법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재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별도로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이날 이 부분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그러나 강 씨가 이미 3년간 복역했기 때문에 재수감은 되지 않는다. 무죄 확정에 따라 징역 1년을 초과한 구금일수에 대해서는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연합뉴스

※ 이 제본은 '필요가 있다' '사랑의 추억'과 '사랑의 추억'을 잘 읽고 사용하십시오. 광고심의일: 심의번호 2015-GN1-04-0011

대한보청기 소식 **기쁜 소식**

부담적은 보청기 렌탈

부모님께 **효도선물** 하세요!!

부담적은 월 **3~4만원**으로 수백만원짜리 보청기 선물하세요!!

-대한보청기-

●강안본점 02)2248-5600 ●종로본점 02)743-8100 ●강남본점 02)542-8500 ●송파-잠실본점 02)420-2090 ●영등포본점 02)2637-2800 ●관악본점 02)3285-7600 ●인천(부평)본점 032)516-2200 ●수원본점 031)248-7200 ●분당본점 031)707-5787 ●일산본점 031)917-1100 ●의정부본점 031)840-2001 ●구리본점 031)551-1310 ●안산-시흥본점 031)407-2999 ●천안-아산본점 041)522-1400 ●청주본점 043)225-2900 ●대전본점 042)486-9944 ●대전동구본점 042)634-2080 ●대구본점 053)253-4400 ●대구서부본점 053)657-3700 ●대구북구(칠곡)본점 053)311-7900 ●포항본점 054)231-8070 ●강원(원주)본점 033)731-2114 ●부산본점 051)819-0038 ●부산북구(덕천)본점 051)335-7800 ●울산본점 052)256-9050 ●마산-창원본점 055)222-3050 ●전북(전주)본점 063)251-4999 ●순천-여수본점 061)741-4880 ●광주-전남본점 062)430-8900

※ 대전동구본점은 대한보청기와 유성대학교 연가정학과가 공동 인턴쉽 및 연구 협약된 곳입니다. ※ 상기본사직원은 전국 어느 자정을 가나 동일한 시스템(제품·가격·서비스)입니다.

5월 한달!! 효도의달 특별 모델 선정!!
(5월 한달 한정! 보청기 구입 시 30~40% 할인)

인기 상품

- **맥소 프로(개당)**
평생 가입비 | 242,000원 | 월 렌탈료 | 40,000원
- **맥소 스태프2(개당)**
평생 가입비 | 280,000원 | 월 렌탈료 | 48,000원
- **맥소 크리스프2(개당)**
평생 가입비 | 280,000원 | 월 렌탈료 | 48,000원

01 | 맞춤형 귀속형 한달 3~4만원!
02 | 제반서비스 전무료!
03 | 무료 방문 홈 서비스!
04 | 천사 안심 손실 보장 제도!

광주·전남 본점 **062)430-8900**
순천·여수 본점 **061)741-4880**
전북·전주 본점 **063)251-4999**